제2호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견·조·사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1992. 8.

한국법제연구원

『국내입법의견조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법의견과 향후 예측가능한 입법수요를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생활과 국가의 입법정책 및 입법과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입니다.

일반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입법의견을 빠짐없이 수집·검토하는 것은 본 조사연구의 목적과도 직결됩니다. 보다 완전한 입법의견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일반국민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연구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번호 (02) 722-0163~5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박 상 철
연 구 원 김 창 규
연 구 원 윤 성 승

목 차

제 1 편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Ⅰ. 문제의 소재 ····· 1

Ⅱ. 간통처벌규정의 존폐논쟁 ····· 3
1. 입법추진현황과 외국의 예 ····· 3
2. 간통죄에 대한 각계의 존폐논쟁 ····· 8
3. 입법방향에 관한 몇가지 견해 ····· 20

Ⅲ. 낙태죄와 낙태의 허용범위 ····· 22
1.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입법현황 ····· 22
2.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여러 의견 ····· 25
3. 입법방향에 관한 몇가지 견해 ····· 35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Ⅰ. 최근입법의견 동향 ····· 37
1. 최근입법의견 목록 ····· 38
2. 최근입법의견 요지 ····· 41

Ⅱ. 최신법령 소개 ····· 59

제 1 편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Ⅰ. 문제의 소재

법무부는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1992년 4월 8일 형법개정시안을 입법예고(관보 제12087호)하였다. 이는 40년만의 개정작업으로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양상을 대폭 수용한 "형법전의 대수술"이라고 까지 불리우고 있다.

법무부는 1985년 6월 24일 학계인사 12명, 판사·검사·변호사 각6명 등 전문가 30명을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위원으로 위촉, 7년간의 연구검토와 250여차례의 회의끝에 형법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개정작업의 규모는 52개 조항의 신설, 39개 조항의 삭제, 101개 조항의 수정, 그리고 모든 범죄의 형량 재조정이라는 사법사상 최장시간이 걸린 최대규모의 작업이었다.

그러나 양적(量的) 개정작업 못지않게 그 질적(質的) 개정작업 또한 큰 변화와 전환을 보여, 국익보다는 개인기본권에 역점을 둔 죄형법정주의의 명시, 전시요소의 삭제, 컴퓨터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신종범죄처벌조항의 신설, 간통죄 및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낙태죄의 대폭수정, 교화중심의 형벌제도개선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개정시안은 입법예고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쟁을 유발하였고, 특히 간통죄폐지와 낙태허용의 경우 여성계와 종교계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간통죄 폐지안에 대한 여성계의 반대운동과 법무부 주최의 공청회 및 여론조사기관의 반대의견개진은 급기야 1992년 6월 1일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 간통처벌규정을 존치하되 「현행의 2년이하의 징역」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최종확정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형법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존폐 및 허용범위에 대한 입법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간통 및 낙태죄의 경우 국회토의과정이나 유예기간중 많은 논쟁이 재론될 여지가 다분하다.

외국의 경우, 낙태허용여부를 둘러싸고 법률논쟁의 차원을 넘어 정치문제로 첨예화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올 대통령선거의 주요쟁점으로 등장하였고, 독일은 통독후 구동독의 낙태죄허용조항을 채택함으로써 집권당(기민당)의 콜 수상이 헌법소원제기를 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낙태허용운동이나 금지운동이 멀지 않아 정치 및 사회문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조사연구는 간통처벌규정의 존폐논쟁과 낙태죄 및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여러 입법의견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객관적으로 분류·소개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입법방향에 관한 여러 견해를 검토·분석함으로써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다양한 입법의견 등을 표출·집약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Ⅱ. 간통처벌규정의 존폐논쟁

1. 입법추진현황과 외국의 예

간통의 처벌규정에 관한 논란은 형법제정당시부터 있어 왔다. 정부수립이후, 법전편찬위원회(법제편찬위원회에서 계승·발전, 1948.9.17 발족)는 법제편찬위원회의 「간통부녀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남녀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남녀쌍벌로 하는 규정」으로 요강을 작성[1] 하였으나 형법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간통죄를 폐지하여 정부로 보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간통죄에 관한 규정을 다시 포함시켜 국회로 이송(1951.4.13)하였다. 정부초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면서 간통죄가 삭제되어 수정의결(1952.8.29)되고, 정부초안과 법사위의 수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변진갑외 20인의 수정안·방만수외 20인의 수정안·박순천외 23인의 수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초안은 이러한 수정안들과 함께 제15회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55차 본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쳤으나 회기가 종료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재회부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재의결하여 제16회 임시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1953.6.5)하였다. 정부초안과 여러 수정안은 열띤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졌는데, 법사위의 수정안은 재적의원 110명중 46:74로 부결되고, 정부안은 재적의원 113명중 57:56의 1표차로 통과되어 1953년 9월18일에 공포되고 1953년 10월3일에 시행하게 되었다.

그후, 형법의 대폭수정을 위한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가 발족

1) 조선법제편찬위원회 형법기초요강, 법정 제3권 제7호(1948.7), 46면.

(1985.6.24)되면서 간통죄의 존폐문제는 소위원회의 연구검토 후, 표결에 부쳐졌는데 ① 간통행위의 불벌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②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③ 개인의 성에 관련된 사적 윤리에 형법이 간섭해서는 안되고, ③ 간통죄를 존치함으로써 선량한 배우자보다 복수심 많은 자만을 보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 가족의 장래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④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범죄의 예방적 효과 및 재사회화의 효과도 거둘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간통죄의 폐지의견이 압도적이었다.[2] 이에 법무부는 간통죄를 폐지한 「형법개정요강」을 작성하였으며,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형법개정시안에 대하여 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있고, ②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민법상 책임을 지우는게 세계적인 추세이며, ③ 간통죄를 그대로 둘 경우, 양순하고 선량한 사람보다는 복수심 많은 사람을 보호하게 되어 법집행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형사정책적으로 볼 때도 범죄억지효과나 교정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의견(1990.2.22)을 냈다.[3] 이와 같이 개정방향은 간통죄폐지의 추세였으나 1990년 9월10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합헌결정[4]」이 나오자 법무부는 1990년 9월17일 "헌법재

---

2) 8:0으로 간통죄존치에 찬성하는 위원은 없고, 박정근·이형국 위원은 기권함(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형사법개정자료(Ⅷ) - 형법개정요강 소위원회의심의결과 -, 1989.1.27., 411~413면).

3) 한국 92.2.23., 19면.

4) 헌법재판소결정 1990.9.10., 89헌마82
"①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② 간통죄의 규정은 남여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니 법 앞의 평등에도 반하는 것이 아니다. 또

판소의 결정을 고려하여 간통죄존치 및 벌금형도입 등 형법의 다양화를 고려하겠다"[5]는 견해를 밝혔고, 이후 1991년 10월31일에 "헌재결정 및 간통죄존치를 일반국민이 원한다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최근 조사와 여성단체 및 유림의 의견을 고려하여 간통죄를 존치시키되 벌금형을 함께 두는 방안과 간통죄 전면폐지 등 2가지 방안을 내놓고, 형법개정위원회에서 찬반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6] 결국 법무부의 형법개정특별위원회는 간통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시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위해 공문을 보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형법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공문(1991.12.14. 발송, 1992.1.31.까지 회신요망)에 대하여 1992년 3월2일 ① 현행 증거확보가 되어 기소되면 실형선고율이 높은 편이므로 실무상 간통죄폐지는 관행에 어긋나고, ② 여성 및 가정의 보호, ③ 부부간의 성질서유지, ④ 여성이 위자료를 받기 위한 고소권남용의 수단이 아니고, ⑤ 형법에서 간통죄를 폐지하였다고 하여 형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통죄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답신을 발송하였다.

법무부는 법제처와 협의를 거친 뒤, 1992년 4월8일에 간통죄를 폐지한 형법개정시안을 입법예고[7]하면서 간통죄의 존폐여부는 1992년 4월29일~30일, 양일간의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

한 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는 경우,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형식의 주문을 선언함이 옳다."(헌법재판소판례집제2권, 1991, 306면).

5) 중앙 90.9.17., 19면.

6) 경향 91.11.1., 2면.

7) 관보 제12087호(1992.4.8)를 참조.

다. 이에 1992년 4월2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3개 여성단체는 「간통죄 폐지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간통죄폐지를 반대하는 『우리의 주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8] 법무부 주최의 공청회에서도 존치의견이 강했으며, 또한 언론기관 및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도 대체로 7대 3으로 존치의견이 우세하였다.[9] 법무부는 1992년 5월29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27일부터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확정작업에 들어갔고, 1992년 6월1일에 형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는 간통죄를 존치하되 처벌을 「현행 2년이하의 징역」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최종확정하였으며,[10]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1992년 6월24일에 간통죄의 법정형을 낮추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11] 현재 법무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형법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의 경우 전반적인 추세[12]는 간통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하고 있으며 간통죄를 존치하고 있는 나라(미국의 몇개주·오스트리아·자유중국)의 경우도 처벌하는 예가 거의 없어 그 운영실태가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

---

8) 본 보고서 17면 참조.
9) 동아일보사와 동서조사연구소의 공동조사결과는 간통죄폐지에 대하여 71.3%가 반대한 것으로(동아 92.4.28.,4면), 세계일보사의 「세계풍향계」의 조사결과는 72.7%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음(세계 92.4.20.,1면).
10) 국민 92.6.1., 2면.
11) 경향 92.6.25., 2면.
12) 자세한 내용은 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152~168면과 최성창, 『간통죄폐지안의 배경』, 가정상담 통권 104호(1992.5), 7면을 참조.

최근에(1969년) 형법개정을 통해 간통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독일의 경우, 「형벌규정이 간통에 의해서 침해된 위태한 혼인을 간통행위자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하고 간통죄의 폐지가 국민들의 오해를 살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민들이 갖는 도덕적인 힘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개정의견을 내놓은 바 있고, 미국의 경우도 메릴랜드주 등 몇개의 주에서 간통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간통을 형법전에서 삭제하였고, 1958년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미국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이라는 각주의 형법개정지침을 통해서도 간통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2. 간통죄에 대한 각계의 존폐논쟁

간통죄의 존폐여부는 이번 형법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최대쟁점이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비록 간통죄의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리사회의 성윤리 및 성문화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부족과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이라는 진단은 간통죄 폐지의 입법방향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단지 형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간통죄의 폐지가 절대우세였던 점과 처벌규정의 완화 및 벌금형의 채택으로 개정된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실형선고율이 높았던 판결 및 형집행 양상에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예견된다.

간통죄에 대한 각계의 존폐논쟁

각 계	존 치 의 견	폐 지 의 견
법조 및 법학계	○ 김숙자(명지대 법대교수) 개인생활을 법으로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고, 법학적 입장에선 폐지돼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회 구성원이 반대하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 92.4.12.,8면) ○ 박은정(이화여대 법대교수) 간통죄폐지는 전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사회적·문화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서둘러 폐지하거나 무조건 존치시키기보다 현행 간통죄규정의 이혼소송전제조항을 삭제하는 등 먼저 문제부분을 보완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한 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가정상담	○ 김진국(변호사) 간통행위는 도덕·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를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남녀간의 윤리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여성의 권리보호는 민사상의 위자료 산정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는 뒤늦은 감이 있다. (한국 92.4.9.,23면) ○ 신동운(서울대 법대교수) 간통죄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할이 실제로 큰 것은 아니고, 오히

각 계	존 치 의 견	폐 지 의 견
법 조 및 법 학 계	통권 104호,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주최 「간통죄폐지론에 대한 토론회(1992.4.27)」 요지, 1992.5,6면; 국민 92.4.28.,10면) ○ 김상철(변호사) 간통고소가 악용되는 폐단은 있지만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이다. 현재의 사법관행은 간통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와 실형선고로 임하고 있는데 기계적 동식처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는 유연한 자세가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정조관념이 문란해지고 가정파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엄연히 살아 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여론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은 역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고시계 92.8,60~61면; 조선 92.5.1.,5면) ○ 백형구(변호사) ① 간통죄를 폐지하면 부부간의 성윤리가 문란해지고, ② 간통죄를 존속시킴으로써 가정파탄을 예방할 수 있고, ③간통죄가 위자료를 받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며, ④ 간통죄를 폐지하여 어떤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근거로 간통죄 폐지를 반대한다. (가정상담 통권 104호,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주최 「간통죄폐지	려 과다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등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간통죄 처벌규정을 둔다고 해서 국민에게 도덕심을 불러일으키고 간통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 (한국 92.4.9.,23면) ○ 안상수(변호사) ① 세계적 추세는 간통죄의 폐지방향인데, 이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국가가 형벌로 억압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며, ② 간통죄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줄기보다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가정파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③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른 부부가 별거를 하면서도 한쪽이 이혼에 동의해 주지 않아 억지로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등, 간통죄로 인하여 비인도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④ 간통죄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 ⑤ 화류계여성들까지 결혼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여 간통죄로 구속하는 것은 우리의 법감정에 맞지 않으며, ⑥ 간통죄가 있다고 하여 간통을 못하는 경우는 드물고, ⑦ 간통죄를 폐지하면 여성의 불이익이 증가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새민법에 따르면 아내에게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생겼으므로 경제적 이유로 간통죄를 유지할 의미는 없어졌고, 오히려 외국의 경우처럼

각 계	존 치 의 견	폐 지 의 견
법 조 및 법 학 계	론에 대한 토론회(1992.4.27)」 요지, 1992.5,5면; 국민 92.4.28.,10면; 한국 92.4.28.,22면; 서울 92.4.29.,14면) ○ 임재연(변호사) 간통죄의 경우 처벌목적 이외에도 법이 갖는 예방기능이 다른 범죄보다 강하므로 간통죄를 우선 폐지하기보다는 존치시키되, 현행 간통죄가 법정형에 있어서 가혹한 면이 있으므로 벌금형을 적용하는 등 법정형부분을 손질하여 재판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가정상담 통권 104호,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주최 「간통죄폐지론에 대한 토론회(1992.4.27)」요지, 1992.5,6면; 한국 92.4.28.,22면; 서울 92.4.29.,14면) ○ 김일수(고려대 법대교수) 간통죄 존폐여부는 사회의 지배적인 법의식을 존중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법의 기능중엔 규범을 이끌어 내는 기능이 있어 간통죄를 폐지하면 이를 대체할 책임 있는 가정윤리의 모델이 새롭게 등장,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성보다 감성이 풍부한 우리의 국민 정서에 비추어 볼 때 간통죄의 폐지에 따른 역작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새제도의 장단점이 의심스럽고 논란이 많을 때는 기존의 상태를 존중해 결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간통죄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간통한 당사자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 (한겨레 92.4.17.,10면) ○ 김기춘(법무부장관) 법과 공권력이 일방 배우자의 분풀이나 위자료 받는 일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형법개정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17:7의 폐지쪽이 우세했고, 성은 내밀한 사생활의 문제이므로 법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프랑스·영국·이태리·일본은 47년에 독일은 69년에 간통죄를 폐지했고, 미국의 몇개주에 남아 있으나 사문화된 상황이다. 그들 나라에서 중혼은 처벌하되 성문제는 개인의 윤리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가정이나 부부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거나 민사로 해결해야지 형법으로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고, 간통죄수사에 소비할 수사력이 있으면 민생치안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서울 92.4.10.,4면; 한국 92.4.12.,5면; 경향 92.6.2.,2면) ○ 이재상(경희대 법대교수) ① 성적 성실의무의 침해는 이혼과 손해배상에 의해 해결하면 족하고, ② 현행 형법의 간통죄는 친고죄이며 간통죄의 고소를 위해서는 혼인이 해소

각 계	존 치 의 견	폐 지 의 견
법 조 및 법 학 계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법무부주최 「형법개정시안공청회(1992.4.30)」 자료집, 1992. 4,60면; 사법행정, 1992. 6, 28~29면; 조선 92.5.1.,14면) ○ 이영자(성신여대 법대교수) 간통죄는 존치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간통죄의 경우, 개인적 법익보다는 사회적 법익의 보호기능이 더 중요하다. 즉 간통은 단순히 결혼한 남녀의 성관계나 개인의 자유로운 성결정권,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라 가족제도의 유지, 일부일처제도의 보장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② 간통죄 존폐여부는 법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법현실의 문제다. 현실적으로 일부일처제하에서 이와 상치되는 이중적인 성윤리, 즉 간통에 대해 민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이같은 견제장치의 필요성 때문이다. ③ 간통죄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여성의 지위가 열악하기 때문에 폐지돼서는 안된다. 간통죄가 없어지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 92.5.1.,14면) ○ 김중빈(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각종 여론조사결과가 나타내고 있듯이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도 간통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상 간통죄를 폐지	되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의 보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③ 간통죄는 상간자를 항상 같이 처벌하므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위자료를 강제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동아 92.4.20.,5면) ○ 최성창(법무부검찰국 검사) 현재 전국 교도소 수감자중에 여성은 4%에 불과하나 간통죄수감자 가운데 여성비율이 무려 48%에 이르고, 여성의 간통은 예외없이 고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간통죄의 존치는 여성지위보장에 크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여성들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간통은 보복의 수단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협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없애는 추세이므로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 (가정상담 통권 104호, 『간통죄폐지안의 배경』,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주최 「간통죄폐지론에 대한 토론회(1992.4.27)」 요지, 1992.5,7면; 서울 92.4.29.,14면; 국민 92.4.28.,10면; 한국 92.4.28., 22면; 서울 82.4.29.,14면) ○ 고영소(변호사) 대부분의 여성은 남자들과 달리 이혼을 각오하고 고소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여자들이 간통죄의 피해

각 계	존 치 의 견	폐 지 의 견
법조 및 법학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즉 간통죄는 존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간통죄의 규정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심히 가혹하기 때문에 간통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완화하여 벌금형 등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국민의 법감정이 성숙된 경우에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간통죄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부산가정법률상담소주최 「간통죄수정안에 대한 토론회」, 1992.6.26., 20면)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① 현행 증거확보가 되어 기소되면 실형선고율이 높은 편이므로 실무상 간통죄폐지는 관행에 어긋남, ② 여성 및 가정의 보호, ③ 부부간의 성질서유지, ④ 여성이 위자료를 받기 위한 고소권남용의 수단이 아님, ⑤ 형법에서 간통죄를 폐지하였다고 하여 형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개정시안의 간통죄폐지에 반대한다. ○ 헌법재판소 조규광·김문희의 보충의견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는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되어 있어서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는 사회상황·국민의식변화에 따라 그 규범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범죄적 반사회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	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피해구제의 측면에서도 효용이 없으며 반도덕적 행위를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에 폐지론을 지지한다. (가정상담 통권 104호,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주최 「간통죄폐지론에 대한 토론회(1992.4.27)」 요지, 1992.5, 6-7면; 한국 92.4.28., 22면; 서울 92.4.29., 14면) ○ 김창국(변호사) 개인의 성생활에까지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간통죄는 폐지함이 마땅하다. 또한 간통죄의 존폐여부는 이혼율증가현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간통죄가 저열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 92.5.1., 14면) ○ 김규헌(서울지검 검사) 수사실무차원에서 간통죄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매년 13,000~18,000여건의 간통죄에 대한 고소가 이뤄지지만 이중 70%정도가 기소전 또는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고, 실제 실형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10%밖에 안된다. 이런 통계로 볼 때 간통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불법적인 성관계」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범죄예방효과도 별로 기대할 수 없다. (조선 92.5.1., 14면)

각 계	존 치 의 견	폐 지 의 견
법조 및 법학계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간통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범위안에서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권, 1991,307면)	○ 오영근(한양대 법대교수) 간통죄는 민법상 여성에게 유리한 입장이지만 형법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현실을 돌아보아야 한다. 재산이 많은 가정의 부인에게는 유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여성에게는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간통배우자에게 재산분할권이 인정되는 현실에서는 위자료문제 등 민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선 92.5.1.,14면) ○ 박상기(연세대 법대교수) 간통죄존폐의 문제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가와 형사정책적 판단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부 간통죄존치론자들이 여성과 성윤리보호, 간통예방기능을 들어 폐지를 반대하고 있으나 간통행위를 처벌해야만 가정이 보호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일부에서 간통죄 고소의 전제요건인 이혼소송청구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은 그것대로 받고 이혼도 못하는 상태에서 애정이 없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조선 92.5.1.,14면) ○ 대검찰청 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 비추어 개인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②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민

각 계	존 치 의 견	폐 지 의 견
법조 및 법학계		법상 책임을 지우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③ 간통죄를 그대로 둘 경우 양순하고 선량한 사람보다는 복수심 많은 사람을 더 보호하게 되어 법집행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형사정책적으로 볼 때 범죄억지효과나 교정의 효과가 없으므로 형법은 개인의 사생활질서, 특히 성에 관계되는 사적윤리에 간섭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법무부가 의뢰한 형법시안에 대해 간통죄 폐지의견을 낸다. (한국 92.2.23.,19면) ○ 헌법재판소 한병채·이시윤의 반대의견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합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이외 달리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한 응보적 대응의 형벌제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행 형법 제241조에서 간통죄에 대해 징역형만을 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로서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간통죄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권, 1991, 307면) ○ 헌법재판소 김양균의 반대의견 간통죄는 사생활 은폐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위헌이며 일보를 후퇴하여 동죄의 존치

각 계	존 치 의 견	폐 지 의 견
법조 및 법학계		의 합헌성 즉 범죄화는 일응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벌로 징역 2년 이하의 자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헌법재판소판례집 제2권, 1991, 307면)
여성계	○ 나영희(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국장) 향락산업의 만연과 인신매매 등 사회적 부조리를 척결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안된 상황에서의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다. (한국 92.4.9., 23면) ○ 김계정(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간통죄는 우리여성이 남자의 외도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남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정에서 간통죄 폐지는 절대 안된다.(한국 92.4.9.,23면) ○ 곽배희(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아직 우리사회는 전통적 유교사상에 근거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는 여성의 자유로운 행동이 가정안팎에서 어렵고, 또한 이중구조적 성규범이 남자들의 무절제한 성생활을 눈감아 주고 있어 간통죄의 폐지야말	

각 계	존 치 의 견	폐 지 의 견
여 성 계	로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겨레 92.4.12.,8면; 한겨레 92.4.17.,10면) ○ 양정자(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간통죄의 존속은 남자들의 계속적인 외도행위에 제동을 걸어 가정파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시 경제력이 미약한 여자측의 생존권이 신속히 보장되는 법적장치나 국가의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간통죄가 위자료를 받는 수단으로 쓰여질 수 밖에 없는 한 존속돼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70%이상이 간통죄의 폐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간통죄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국민의식을 무시한 처사로 옳지 않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아내의 동의 없는 남편의 성행위가 강간죄를 성립시킬 정도로 성적 자유에 대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제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 간통죄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므로 여성에게 정당한 권리와 지위가 주어질 때까지 간통죄는 존속돼야 한다. (가정상담 통권 104호,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간통죄폐지론에 대한 토론회(1992.4.27)」요지, 1992.5,7면; 동아 92.4.20.,5면; 국민 92.4.28.,10면; 한국 92.4.28.,22면; 서울 92.4.29.,14면)	

각 계	존 치 의 견	폐 지 의 견
여 성 계	○ 여성단체의 『우리의 주장』 ① 정부는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간통죄폐지가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성의 사회적 권익향상과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될 때 간통죄는 외국에서처럼 생활속에서 스스로 소멸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급한 것은 폐지가 아니라 폐지의 전제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다. ② 현행 간통죄조항 자체에 무리가 많기 때문에 수정, 보완·강화되어야 한다(간통죄 고소절차의 간소화, 사실상의 이혼, 별거상태에서의 간통은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것 등등). ③ 여성위압의 현실에서는 간통죄의 폐지냐, 존속이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 근본적으로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적으로 여성이 현저히 불리한 현행법은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개정된 가족법 조항에서의 재산분할 청구권 조항이 여성의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이를 정착화 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1992년 4월 2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종 교 계	○ 한철하(아세아연합신학대학장) 그러지 않아도 날로 해이해지는 성윤리가 간통죄 및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로 인해	

각 계	존 치 의 견	폐 지 의 견
종 교 계	더욱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 아울러 전반적인 사회도덕도 와해될 것이다. (국민 92.4. 9.,14면) ○ 김성영(성결교신학대학원 교수, 목사) 간통죄와 낙태일부허용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 큰 죄이며, 간음은 다른 죄와 달리 몸안으로 짓는 죄이므로 예수께서도 엄격히 금하셨다. (국민 92.4.19.,14면) ○ 이태덕(마산교회 목사) 가정과 사회에 위기감을 줄 형법개정안은 폐지돼야 한다. 아울러 소돔과 고모라성이 성적문란으로 인해 멸망당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 92. 4. 19.,14면) ○ 한완석(광주제일교회 목사) 우리사회에 간통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이번 형법개정안은 대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조치이다. (국민 92.4.19.,14면) ○ 주수일(새생활가정세미나 대표, 장로) 그동안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이 우리 생활규범에 기준을 설정해 준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다. 따라서 그 기준이 없어졌을 때의 혼란상이 충분히 예견되므로 간통죄폐지의 개정안에 반대한다.(국민 92.4.19.,14면)	

각 계	존 치 의 견	폐 지 의 견
종 교 계	○ 김경수(성균관 관장) 성윤리가 날로 문란해져 가는 상황에 비추어 간통죄를 폐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간통죄의 폐지에는 반대한다. (한국 92.4.9.,23면)	
언 론 계		○ 서울신문 사설 간통죄의 폐지는 도덕과 윤리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남녀간의 사생활문제를 국가공권력이 개입한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죄의 폐지는 타당하다는 게 우리의 소견이다. 다만 간통죄가 이혼여성의 경제적 보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온 점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전향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새로운 판례 등을 통해서 간통죄가 갖고 있던 간접적인 기능을 살려주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 92.4.10.,2면)

3. 입법방향에 관한 몇가지 견해

간통죄의 존폐문제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올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형법개정안은 현행 형법규정에 큰 수정 없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현 행 형 법 (1953년 9월 18일)	형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1992년 4월 8일) 법무부공고제1992-4호	형법개정법률안 (1992년 6월 1일) 수 정 안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제31장 음란의 죄 <삭 제>	제3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325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제1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처벌규정의 존폐에 관한 입법의견은 형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검토되었는데, 대략 현행규정의 폐지 및 그에 대한 반대의견의 대립과 자유형일원주의를 지양한 벌금형의 도입 등이 주요 입법방향으로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힘이 약한 여성의 고소불능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제기요건」을 없애는 입법론이 개

진되었다.

간통죄폐지로 인한 부작용 및 사회적 충격을 염려한 여성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벌금형도입·형기단축 등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선에서 개정(안)작업이 마무리 되어졌으나, 과연 사회적 현실과 괴리된 법규정이 계속하여 존속된다거나 더 큰 법익을 놓친 결과는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Ⅲ. 낙태죄와 낙태의 허용범위

1.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입법현황

미국에서 낙태의 합법화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폭넓게 확산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73년 미국연방대법원의 「로」사건판결[13]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낙태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텍사스주의 형법규정을 위헌·무효로 선언함으로써 당시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던 낙태수술을 합법화하였다.

그후, 낙태문제에 보수적 입장에 선 공화당정권이 들어서면서 낙태금지로의 방향전환을 위하여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이 보수적 성향의 인사로 구성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계와 진보파는 대체로 낙태의 합법화를 찬성하였으며 종교계와 보수파는 반대하는 쪽이었다. 1992년 6월 29일, 연방대법원이 낙태조건을 엄격히 규율한 펜실베니아주법을 대부분 지지함으로써 사실상 낙태규제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논란은 정치쟁점화되어 올 대통령선거의 최대 쟁점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독일의 경우도 통독이후 구동독의 낙태죄 허용조항(「산모의 의사결정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12주내에 낙태할 수 있다」)을 채택함으로써 낙태문제가 사회 각계각층의 열띤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집권당(기민당)의 「콜」수상이 헌법소원의 제기를 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위적 임신중절 합법화여부가 이와 같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정치적

---

13) Roe v. Wade, 410 U.S.113(1973)
김운용, 「Roe v. Wade의 의미」, 미국헌법연구소 「미국헌법연구(1990)」제9호, 107~146면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음.

쟁점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것은 낙태문제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임부의 자기결정권확보) 및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자유권과 태아의 생명)과 직결된 예민한 쟁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본격화 된 산아제한의 정책 및 장려운동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면서 낙태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졌고, 아들선호풍속은 낙태행위를 더욱 조장·확산하였다. 낙태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 인식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외국과 같은 정치적·법률적 논쟁과는 무관한 듯 하였으나, 이번 형법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종교계 및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입법의견이 정치 및 사회문제화의 단계로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서서히 표출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입법현황을 먼저 밝히고, 형법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가급적 빠짐없이 소개·검토하여 우리 사회에서도 본격화될 낙태논쟁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 행 형 법 (1953년 9월 18일)	형 법 개 정 법 률 안 (1992년 6월 1일) 수 정 안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락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	제4장 낙태의 죄 제133조(낙태) ① 임신중인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임신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락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4조(영리낙태, 부동의낙태) ① 영리의 목적으로 제133조의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임신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락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중인

현 행 형 법 (1953년 9월 18일)	형 법 개 정 법 률 안 (1992년 6월 1일) 수 정 안
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락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락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전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5조**(낙태의 허용범위) ① 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신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락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태아가 유전적 소질 또는 출생전의 유해한 영향으로 인하여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 3. 제166조 내지 제170조, 제172 내지 제175조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낙태는 임신한 날부터 24주내에, 제1항 제3호 또는 제1항 제4호의 낙태는 임신한 날부터 20주내에 하여야 한다.

현 행 모 자 보 건 법 관 련 조 항 (1987년 11월 28일 개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2. 낙태의 허용범위에 관한 여러 의견

각 계	적 극	소 극
법조 및 법학계	○ 김기춘(법무부장관) 지금까지 덮어두고 있던 낙태문제를 건전한 의료의 일부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형법개정안은 큰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모체의 건강상 문제, 태아의 심각한 손상,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은 임신 20~24주이내에 한해 낙태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밖의 낙태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하여 『낙태왕국』이라는 오명을 씻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92.04.12.,5면) ○ 차용석(한양대 법대교수) 낙태에 관한 시안의 내용이 임신부의 사적 자유권을 다소 제한한 듯 하지만, 현행법이 기득권적 우위를 누리는 상황에서 생명존중사상을 선언적 상징적 의미로서 나마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 본다. (동아 92.4.25.,5면) ○ 이재상(경희대 법대교수)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이므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낙태죄의 허용범위는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이므로 형법에서 규정할 성질이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시안이 우생학적 적응(제2호)	○ 김종배(건국대 교수) 낙태가 허용될 경우 무엇보다도 최근 청소년성범죄와 청춘남녀간의 혼전관계가 급증하는 추세에 비추어 낙태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큰 문제이며, 종교적 측면에서도 낙태는 생명을 부여한 조물주에 대한 도전행위로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낙태허용으로 생명경시풍조는 더욱 만연할 것이며 형법개정안의 경우, 자의적 해석 및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낙태행위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단속의지가 필요하다. (동아 92.4.25.,5면)

각 계	적 극	소 극
법조 및 법학계	과 윤리적 적응(제3호)의 범위를 모자보건법에 비하여 현저히 확대한 것은 이론상 당연하다. 낙태의 허용시기도 의학적 적응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우생학적 적응의 경우는 24주, 윤리적 적응의 경우는 20주로 제한한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의 규정이 허용시기는 야만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길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의 허용범위를 형법에 규정하였다고 하여 낙태죄에 관한 형법규정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다. 적응규정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형법개정시안 공청회(1992.4.30)」자료, 47~48면; 사법행정 92.6, 23면; 조선 92.5.1., 14면) ○ 백형구(변호사) 낙태죄존치에 동의하면서 그 허용시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협의과정을 거쳐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조선 92.5.1., 14면) ○ 김일수(고려대 법대교수) 현실적으로 불법적인 낙태가 횡행하는 것을 막기위해 산모와 전문의사 등의 협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조선 92.5.1., 14면)	

각 계	적 극	소 극
법조 및 법학계	○ 최성창(법무부검찰국 검사) 낙태허용여부는 종교적·교리적 측면에서만 다뤄서는 안되고, 사회적·윤리적 측면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강간 등으로 인한 임신까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분허용은 인정돼야 한다. (조선 92.7.27.,22면)	
종교계	※ 국회의원(카톨릭계, 소극) ○ 정창현(민자당 국회의원) 낙태는 모든 법의 원천인 자연법과 하느님의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물질위주의 가치관과 현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온갖 범죄의 원인이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1992년 7월13일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발표한 「태아의 생명을 죽이지 말자」는 제언의 말씀에 적극 찬동하며 형법 제135조의 폐지를 주장한다. (평화 92.8.2.,4면) ○ 이길재(민주당 국회의원) 낙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① 왜곡된 성도덕에 의한 무분별한 성행위규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② 사문화된 법률을 회생시켜야 하며, ③ 의료계의 도덕성이 시급히 확립되어야 하고, ④ 정부의 장애자에 대한 편견을 고쳐야 하며, ⑤ 미혼모와 고아, 장애인	○ 이기정(천주교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신부) 조건부낙태허용은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며, 「미혼모」 문제는 낙태허용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접근해야만 한다. (한국 92.4.9.,23면) ○ 김성영(성결교신학대학원 교수, 목사) 간통죄와 낙태의 일부허용은 기독교적으로 볼 때 큰 죄이다. 간음은 다른 죄와 달리 몸 안으로 짓는 죄이므로 예수께서도 엄격히 금하셨고, 특히 낙태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큰 범죄다. (국민 92.4.19.,14면) ○ 김길수(새생명사랑회 총무) 산모의 건강 등을 이유로 부분적으로 나마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규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측면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산모의 건강보호가

각 계	적 극	소 극
	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며, ⑥ 정부는 낙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 강간이나 간음 기타의 행위로 인한 임신에 대해, 이미 임신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면 낙태를 하더라도 여성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남성에게 오히려 양육책임(양육비용전액 혹은 배상)을 지움으로써 남성의 책임의식을 높여 올바른 성윤리를 세워야 한다. 따라서 낙태금지는 단순히 종교적 교리나 자연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겨 인간 및 사회에 경종과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평화 92.8.2.,4면)	태아의 생명에 우선할 수 없으며 기형아나 장애자, 또는 강간 등에 의해 잉태된 태아도 정상적인 태아와 똑같은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 (조선 92.5.1,14면)
종 교 계	○ 박찬종(신정당 국회의원) 최근 정부당국이 형법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제135조에 「낙태의 허용범위」조항을 신설하였다. 이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형법조항에 명문화한 것으로서 어찌보면 법체계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타당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낙태가 의미하는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생명파괴사상을 무시하고 있다. 낙태의 허용가능성을 형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낙태행위의 당연시함과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평화 92.7.12.,1면; 평화 92.8.2.,4면)	○ 송열섭(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차장, 신부) 우생학적, 유전학적 이유로 낙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은 도태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으로 터무니 없는 발상이며, 낙태죄의 형량을 강화하기는 커녕 완화 내지 일부허용,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형법개정안은 이 사회에 만연돼 있는 낙태행위를 방지하기는 커녕 법으로 명시하여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평화 92.5.31.,5면; 평화 92.7.12.,1면; 평화 92.8.2.,1면) ○ 류현석(전가톨릭정의평화위원회 회장) 모체가 위험한 경우는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차원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에도 굳이 형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평화 92.8.2.,1면) ○ 박토마(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장, 춘천교구장) 지금까지 낙태죄의 사문화는 법적 실효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동안 정부가 추구해 온 반강제적 인구정책에 발맞춰 고의적으로 방임해 왔기 때문

각 계	적 극	소 극
종 교 계		이다. 따라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적자생존에 입각한 살인행위이다. (평화 92.7.12.,1면) ○ 김남수(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수원교구장) 모자보건법이 우생학적 이유로 광범위하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서 일반국민은 죄의식 없이 낙태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연간 150만명의 태아들이 살해당하고 있으며 낙태행위의 범람으로 한국여성들의 건강은 극도로 위협받고 있다.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요,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인명경시풍조의 근원이다. (『천주교와 생명』, 생명문화연구소주최 제1회 「생명」세미나, 1992.4.24.,41면; 평화 92.7.12.,1면) ○ 두봉(주교, 전 안동교구장)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135조 낙태법에 관한 개정시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시키고 있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하느님의 법에 위배되므로 강력히 저지하여야 한다. (『인명의 존엄성』,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주최 「가톨릭교회와 생명운동」세미나, 1992,10면; 카톨릭신문 92.5.31.,3면) ○ 맹광호(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수) 피할 수 없이 임신을 했거나 출산후 양육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돕는 출산시설

각 계	적 극	소 극
종 교 계		과 입양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그만두고 형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낙태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과 복리를 위한다는 정부의 분명한 책임회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평화 92.8.15.,5면)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경갑룡 주교)는 ① 인간의 생명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됨을 재천명하고, ②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이므로 그 자체를 단호히 반대하며, ③ 낙태법은 더욱 엄격히 개정되고 준수돼야 하고, ④ 올바른 성교육과 자연가족계획법이 적극 장려돼야 하며, ⑤ 간통행위는 명백한 죄악이고, ⑥ 간통행위를 한 남녀 모두에게 죄를 묻는 법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낙태죄 및 간통죄의 폐지에 반대의사를 표명한다. (평화 92.5.31.,2면) ○ 낙태죄폐지반대 「평협」성명서 요지 우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991년 11월17일 평신도의 날 강론자료에서 하느님의 창조사업자체를 거스리는 낙태행위는 태아를 통해서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입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2년 6월 21일 한국

각 계	적 극	소 극
종 교 계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가톨릭신문 92.6.28.,2면) ○ 형법개정안 제135조폐지서명운동 주교단성명서 요지 오늘날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경시풍조의 그 근원은 바로 낙태입니다. 자신의 안락을 위한 극히 이기적인 낙태는 분명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살인으로서 개인과 국가를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낙태를 자유화하는 형법개정안 제135조를 삭제하고 낙태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해야 합니다.(1992년 7월13일 한국천주교 주교단; 가톨릭 92.7.10.,3면)
여 성 계	○ 나영희(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국장) 기형아를 조기에 발견한 임산부나 성폭행으로 임신을 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므로 환영한다. (한국 92.4.9.,23면) ○ 김계정(여성의 전화 대표) 종교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건부낙태허용은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낙태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긍정적 조치라고 생각한다. (한국 92.4.9.,23면)	
언 론 계	○ 서울신문 사설 낙태죄는 종교계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문이다.	○ 평화신문 사설 오늘날의 현실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아무리 법개정을 강요

각 계	적 극	소 극
언 론 계	그러나 이번 법개정은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를 형벌에 도입,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거나 강간 또는 혼인할 수 없는 친족간에 임신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일부허용에 불과하다. 종교계의 반대는 일부허용이 결국 전면허용으로 가는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나온 것 같다. (서울 92.4.10.,2면)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존중사상이 뒤바뀔 수는 없다.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인간의 생명은 형성된 순간부터 하느님의 창조행위가 직접 관여하고 있으므로, 낙태는 하느님이 계획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처사라는 것이 교회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생명의 존엄성에 조금이라도 흠을 남기는 형법조항의 개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 92.4.19.,2면) 우리는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개정안 제135조에 대하여 ① 낙태는 하느님이 제정하신 신법을 부정하고 창조질서를 유린·배척하는 것으로서 창조주에 대한 극도의 모독행위이며, ② 낙태허용은 헌법의 기본원리 뿐만 아니라 기존 대법원판례에도 반하고, ③ 정부의 낙태허용범위와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단호히 반대 및 철폐를 주장한다. (평화 92.8.2.,1면) ○ 가톨릭신문 사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간접적 치료로서의 낙태이외에는 여하한 낙태도 신법을 어기는 살인행위로 규정해 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낙태를 자유화하는 형법개정안 제135조를 즉각 폐지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가톨릭 92.7.19., 3면)

각 계	적 극	소 극
기 타		○ 석재호(한림대 의대교수) 임신중절수술문제가 우리나라 실정에서 심각한 문제다. 그야말로 임신 수개월이 된 태아에 대해서도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싶다. 비공식추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약 40만건 정도의 임신중절수술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의 임신중절시술을 허용하는 부분이 철저히 보완돼야 한다. (『맹광호교수의 '의학적 측면에서 본 인간생명'에 관한 논평』, 생명문화연구소주최 제1회 「생명」세미나 보충자료집, 1992.4. 24.,10면)

※ 「형법개정안 제135조폐지서명운동 주교단성명서」 보조자료 요지

(1) 낙태의 범죄성

① 신법과 자연법적인 입장 : 인간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므로 태아의 생명을 파괴하는 낙태행위는 창조질서를 근본적으로 배척하는 죄악이요, 명백한 범죄이다.
② 헌법과 민법 : 낙태행위는 국가법체계의 최고규범인 헌법 제10조와 대법원판례(1985.6.11. 84도 형479(500)) 및 민법 제3조·868조·988조에 위배된다.
③ 간통죄와 낙태죄 : 간통죄는 인정하면서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간통죄에 대한 역행이다.
④ 인구정책과 낙태죄 : 국가시책에 의한 가족계획은 피임방법에 의해야지 낙태행위에 의할 수는 없다. 인구정책의 관점에 의해 낙태죄의 존폐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다.
⑤ 낙태는 인명경시 풍조의 근원 :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경시풍조는 이미 출생대기중, 또는 생성중인 생명에 대한 경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⑥ 낙태죄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 낙태죄폐지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내지 사회적 지위확보와는 무관하다. 부녀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내 역할에 있어서의 제약이나 불이익은 낙태죄의 폐지라는 극단적

인 처방보다는 사회복지적 제반시책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⑦ 여성의 건강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 낙태로 인해 오히려 모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리적으로도 양심의 가책 및 불안 등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생활에 장애를 초래한다.

⑧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식과 낙태죄 : 산부인과 의사의 본연의 임무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새 생명의 탄생을 돕는 것인데 오늘날 정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2) 형법개정안 제135조 부당성 : 순수 법적인 차원에서

① 형법개정안 제135조와 모자보건법 제8조(1973년) : 모자보건법은 일률적으로 28주내까지 사유별로 낙태케 했으나 개정형법 낙태죄 조항은 우생학적 사유는 24주까지 윤리적 사유는 20주까지 허용해서 전의 모자보건법보다 강화된 듯하다. 그러나 형법 제135조에서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삭제함으로써 일반적 낙태허용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② 실제운영상의 문제 : 개정안의 제 135조 제1항1호(건강상의 이유)와 2호(유전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위한 적용사유의 판단을 전적으로 시술의사 1인에게만 맡기고 있고 법상 아무런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인들 사이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무한정 허용한 것과 같은 인식을 심어 주었다. 또한 제135조 제1항3호4호(윤리적 사유)의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위한 적용사유의 판단을 전적으로 임신중인 여자의 의견에 달려 있어 여자는 거짓 사유촉탁으로 쉽게 낙태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3) 가톨릭교리에 입각하여

① 산모 건강상 이유의 부당성 : 태아는 모체의 일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생명체로 임부의 상황에 따라 처분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유전적 이유의 부당성 : 불구자이든 백치이든 모든 생명은 생존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③ 윤리적 이유의 부당성 : 강간에 의하든 근친상간에 의하든 이미 임신된 이상 그 태아는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기 때문에 낙태될 수 없다.(1992년 7월13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사무처; 가톨릭 92.7. 26.,12면)

3. 입법방향에 관한 몇가지 견해

낙태죄에 대한 입법론은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확보」라는 두 요청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었다.

낙태행위는 태아의 생명파괴를 본질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 단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부녀의 정신적·육체적 부담과 사회적 제약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합법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①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낙태죄를 폐지할 수는 없고, 낙태죄의 허용범위는 형법에서 규정할 성질의 것일 뿐이지 모자보건법 등의 특별법에 맡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전에 낙태죄와 허용사유를 함께 명시하자는 방안, ② 낙태죄의 처벌은 형법에서 규정할 성질이지만 허용범위는 모자보건법 등의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사회변화에 따라 탄력성 있는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법전에 낙태금지를 규정하고 모자보건법[14]과 같은 특별법에 허용사유를 규정하자는 방안, ③ 낙태죄 관련규정을 모두 모자보건법 등의 특별법에 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법무부는 형법개정안 작성과정에서 낙태죄에 대하여 현행 규정대로 존치하되 「모자보건법상의 허용범위」를 수용하여 형법전에 함께 명시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형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간통죄와는 그 차원을 달리하나 낙태죄도 법과 도덕윤리의 교착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변동과 그 분위기에 따라 국민의 법

14) 영국의 「영아생명보호법(Infant Life Preservation Act)」과 일본의 「우생보호법」 등은 그 예이다.

감정과 그 인식이 자주 변할 수 있다. 산아제한이라는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절실했던 시절에는 낙태행위에 대한 죄의식은 매우 희박했으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법감정이었다. 여성의 지위상승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확보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도 낙태의 허용범위의 확장 및 일반화를 요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경시풍조에 대해서는 종교 및 법적 차원에서 부단한 대응과 경계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낙태의 허용범위논쟁과 입법방향은 뚜렷한 기준을 향하여 추진될 성질의 것은 아닌 듯하다.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Ⅰ. 최근입법의견 동향

○ 분류기준표

분 야	대한민국현행법령집해당항목
憲 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 一·外 交·國 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內 務·地 方 行 政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社 會·文 化·敎 育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産 業·經 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책·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 林·水 産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 設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科學技術·交 通·遞 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環 境·保 健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法 院·法 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8민사법

1. 최근입법의견 목록

(1992. 7. 11 — 1992. 8. 10)

◎ 憲　　政 …… 41

○ 대통령선거법 개정안

◎ 統一·外交·國防 …… 42

○ PKO 관련 법안 제정 검토의견
○ 병역법 개정의견
○ 병역법 및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개정안
○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 內　務·地方行政 …… 43

○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관련)
○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의견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노래연습장관련)

◎ 社會·文化·教育 …… 45

○ 해직교사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견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영화법 개정의견

◎ 産 業·經 濟 …… 46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에 따른 의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

○ 경제행정규제 관련법 개정의견
○ 영업비밀보호관련법 제정의견
○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의견
○ 국세기본법 관련 결정 및 의견
○ 사회간접자본세 신설에 관한 의견
○ 전자자금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
○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 확대 및 사적복제 부과금 도입 유보에 관한 의견
○ 담배판매및광고규제에관한법률 및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
○ 상법 개정안(지점설립등기요건 완화)
○ 주유소 상품표시제(석유사업법)시행 관련 의견
○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정의견

◎ 農 林·水 産 ····· 51

○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안
○ 농지·임야거래 규제 완화의견
○ 어선법 개정안

◎ 建 設 ····· 52

○ 고속도로 전용차선제 관련 의견
○ 주차조례 개정의견
○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 승용차 10부제운행 관련 의견
○ 도로법 개정안
○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 개정의견
○ 지하개발법 제정의견

◎ 科學技術·交通·遞信 ····· 54

○ 해상스포츠규제관련법 제정시급
○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의견

◎ 環 境 · 保 健 …… 54

○ 환경관련법률 제정의견
○ 골프장환경규제(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의견)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
○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단란주점 관련)

◎ 法 院 · 法 務 …… 56

○ 낙태죄 허용(형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성폭력처벌 관련 법안들에 관한 의견
○ 뇌사 · 장기이식에 대한 논쟁
○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 변호사법 개정시안
○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관련 의견

2. 최근입법의견 요지

(1992. 7. 11 — 1992. 8. 10)

◎ 憲　　政

○ 대통령선거법 개정안

- 대통령선거법의 주요 개정방향을 포괄적 금지규정의 삭제와 선거비용의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불허사항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을 자유화하고 공명선거 보장장치를 강화하여야 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의견>

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

◦ 포괄적 금지규정의 삭제

◦ 후보자당 8천명 정도를 유급선거운동원에게만 실비보상하고 그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음.

◦ 사전선거운동 금지시기를 대통령 임기만료일 전 180일로 정함.

◦ 당단합대회 등 당원집회의 개최방법 구체화

②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견발표의 공영제 확대

◦ TV, 라디오 방송시설 각 3회이내 국고부담

③ 선거의 과열·타락 현상 방지

◦ 선거일전 3일 이후에는 정견발표회 개최할 수 없음.

◦ 후보자 1인마다 현행의 "읍·면·동마다 1회씩 총 3,662회"를 "개최구마다 5회씩 총 1,840회"로 함.

◦ 선거기간 30일에서 21일로 단축

◦ 기부행위의 제한요건강화 및 유형강화

◦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검증강화

④ 공명선거 보장장치의 강화

◦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의 공명선거에 대한 선서서 제출의 무화

◦ 언론의 공정보도에 대한 훈시적 선언규정 신설

◦ 공무원·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그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에 대한 선거운동 및 간여행위 금지

◦ 종교·사회단체 등의 명의에 의한 불공정선거운동 금지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강화

◦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질문·조사권과 즉시 강제권, 시정·주의·경고 및 고발권 등 선거관리위원회 기능강화

⑥ 선거절차의 개선

◦ 우편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고 후보자의 참관인이 참여하는 우편투표소에서 기표하도록 하되, 선거불능 등 우편투표소에 올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거소(居所)에서 기표하도록 함.

◦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조정, 선거인명부작성 감독강화 및 사본교부시기 조정, 공무원·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의 완화, 투개표절차의 개선 및 투·개표장 질서유지 강화

-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을 국회의원선거법 수준으로 강화(허위사실공포죄의 경우, 현행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6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6백만원의 벌금으로 함을 포함하여 32개 항목에 걸쳐 무거운 처벌조항을 둠) (민자당 대통령선거법 개정 소위).

: 한국 92.7.14.,2면; 서울 92.7.21.,1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법개정의견」

※「국내입법의견조사」제1호 38면 -대통령선거법 개정안- 참조

◎ 統一·外交·國防

○ PKO 관련 법안 제정 검토의견

- 일반여론이 크게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군업저버와 군의료지원단 파견을 결정한 것은 성급함(김 근, 한겨레 논설위원).
- PKO에 파병할 때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인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재량으로 파병할 것인지를 검토함(정부).
- 보병부대파견을 주장함(국방부).
- 보병부대파견을 신중히 결정해야 함(외무부).
- 보병부대를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음(국방관련 당정회의).

: 한겨레 92.7.12.,10면 ; 한국 92.7.13.,3면; 국민 92.7.15.,1면; 서울 92.7.16.,1면; 한겨레 92.7.16.,1면; 한국 92.7.16.,1면; 한겨레 92.7.17.,2면~3면; 국민 92.7.23.,2면; 서울 92.7.23.,1면; 조선 92.7.24.,2면; 한국 92.7.24.,2면; 샘이깊은물 92.8월호

○ 병역법 개정의견

- 내년부터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사내직업훈련원」과 민간인이 운영하는 「인정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도 입영연기혜택을 주기 위한 관계법 개정을 추진함(노동부).

: 서울 92.7.21.,19면; 조선 92.7.21.,22면

○ 병역법 및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 개정안

- 산업체 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례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농어민 후계자도 특례보충역 대상에 포함시킴(병무청·민자당).
- 산업체 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인력난이 극심한 탄광(광원), 해양수산(선원)업종 등은 2년 6개월로 더 줄일 방침(병무청·민자당).

: 서울 92.7.23.,1면; 서울 92.7.30.,2면; 한겨레 92.7.30.,2면; 한국; 조선 92.7.30.,23면

○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켜야 할 군사기밀은 엄격히 보호하도록 함(국방부).
- 군사기밀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컴퓨터 등 전자기록 특수매체에 입력된 정보도 군사기밀에 포함시키며, 일반국민의 과실군사기밀누설조항의 삭제, 군사기밀공개요청권 등을 규정함.

: 서울 92.8.5.,1면; 조선 92.8.5.,2면; 한겨레 92.8.5.,14면; 한국 92.8.5.,2면

◎ 內　務·地方行政

○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관련)

- 보험·증권업 종사자들의 80%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일방적 연기에 대하여 강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적인 연기결정을 철회하여야 함(최재호, 사무금융노련 위원장).
- 단체장 선거의 실시시기보다 지방행정제도의 전면적 개혁(중앙·지방정부간의 기능 및 사무배분 재조정, 부단체장의 권한 확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방안 등)이 필요함(한국행정학회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지방행정의 당면과제」 토론회).

- 선거연기는 대통령의 통치권행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민자당).

: 한겨레 92.7.15.,2면; 한겨레 92.7.24.,15면; 한국 92.7.28.,19면; 92.8.6.,2면 ; 한겨레 92.8.8.,2면 ; 한국 92.8.9.,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 39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참조

○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의견

- 대법원의 청주시 의회의 행정정보 공개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 후에 경남 밀양시의회가 같은 조례를 제정했고, 전북도의회도 7월 20일 조례안을 의결하게 됨.
-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정신은 중앙정부의 행정정보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정보 공개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법제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한겨레 92.7.15.,3면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노래연습장관련)

- 시행령에 따라 9월 13일이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래방은 규제를 받아야 하나 대부분의 업소가 규제사항을 알면서도 새로 시설미달의 개업을 한 바 이는 투기목적으로 노래방을 개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벌은 당연(경찰청).
- 노래방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감소하였고 또한 노래방은 외부로 소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상업지구나 위락시설에 자리잡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업지구내의 위락시설 이라는 조건을 갖춘 건물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유에서 관련법규의 폐지와 24시간 영업허가 그리고 미성년자 출입허용을 요구함(전국노래연습실협회 중앙회).
- 노래방이 건전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함께 현실적인 여러 조건들을 감안한 종합대책이 요구됨.

: 서울 92.7.16.,17면; 한겨레 92.7.16.,12면; 조선 92.7.23.,1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 40면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및 의견(노래연습장관련) - 참조

◎ 社會·文化·教育

○ 해직교사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견

-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화를 실천하려다 89년 해직된 전국 1천5백여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키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 (전주시의회 내무위「해직교사 원상 복직을 위한 건의서」).
- 전교조해직자를 복직시킬 경우 성실히 교육에 전념해 온 대다수 교원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켜 교육현장의 황폐화, 국가교육통제권의 무력화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전교조관련자 복직에 반대(교육부).
-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추진 (전국교사추진위원회)

: 한겨레 92.7.11.,12면; 한겨레 92.7.12.,14면; 조선 92.7.17.,23면; 한겨레 92.7.22.,14면; 한겨레 92.7.24.,2면; 한겨레 92.7.25.,15면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복수노조관련

- 한국의 ILO 가입에 따른 노동환경변화와 전반적인 사회민주화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는 허용하지만,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는 불허함(노동부).
- 노동계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3조4호의 전면개정도 동시에 하여야 함. 제3조4호의 개정없는 제3조5호의 부분개정은 산별노조를 막으려는 의도임(박승호, 전국 노동운동단체협의회 노조특별위원장).

퇴직예고제 등

- 산업현장의 인력난 속에 근로자들의 갑작스런 퇴직이 기업의 생산과 인력수급에 끼치는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전에 퇴직의사를 회사에 통보하는「퇴직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함(경제기획원·노동부).
- 현행 노동관계법상 해고요건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해고무효소송이 잇따름에 따라 해고요건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한편, 휴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경제기획원·노동부).

: 한겨레 92.7.18.,14면; 한겨레 92.7.19.,2면; 한겨레 92.7.22.,12면; 한겨레 92.7.25.,10면; 서울 92.8.2.,7면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 내년부터 모든 시·군·구에 단계적으로 사회복지 사무소가 설치되며 양로원 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 개인에게도 허용되고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함(보사부).

: 서울 92.7.23.,19면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최소한 극장벽에 일정한 규격의 현수막을 걸도록 하거나 법규정상 공연간판의 의미를 확대해 일정 규격의 현수막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유용환, 한국연극협회 사무국장).
- 백화점도 유통구조의 개선이라는 명분을 들어 현수막 광고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적 용의 형평상 현수막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함(내무부).
- 연극공연장과 막대한 광고비 동원능력을 갖춘 백화점을 동일시하는 시각은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임(연극계).

: 한겨레 92.7.30.,9면

○ 영화법 개정의견

- 문화부가 관장하던 영화법의 등록과 취소 권한을 상공부에 귀속시키고, 상공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육성·발전시책을, 문화부장관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 영화인의 복리증진 및 기타 영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영화진흥법안, 한국영화인협회 정책위원회).

: 한겨레 92.8.1.,9면

◎ 産 業 · 經 濟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에 따른 의견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는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식 행정이며 현재 공진청에서 전기용품의 소비전력양과 효율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중규제가 됨(관련업계).
- 관련업계가 냉장고 등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 채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향상에만 몰두하고 있어 공진청의 규제만으로는 부족함(동자부).

: 한겨레 92.7.11.,6면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

- 내년 4월부터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 시정명령 외에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공정거래위원회).
-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일정한 판매지역을 정해주되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 판매를 허용하거나, 독과점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참여해 기존 사업자와 경쟁을 벌이는 경우에 지금까지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되어 왔던 「거래지역 제한」을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공정거래법적용을 완화하기로 함(공정거래위원회).
- 중간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권오승, 서울대교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 상호출자총액한도를 40% 이하로 낮추고 첨단기술산업의 법률적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이규억,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 제2금융권의 상호지급보증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화할 경우, 신용질서의 붕괴 및 금리인상등의 부작용 발생(전대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 출자총액·지급보증에 대한 예외인정보다 출자총액·지급보증 한도를 기업의 소유분산정도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강철규, 서울시립대교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 지급보증의 제한대상 기업의 범위를 여신관리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30대 제벌기업군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김경림, 은행감독원 여신관리국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 경제력 집중완화대책은 공정거래법을 주축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여신관리는 한시적·보완적 기능만 담당하여야 함(이성순, 성균관대교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 지급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여건상 무리임(민중기, 대한상공회의소 이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 「부당한 공동행위」규제대상에 판매관련 공동행위외에 구매도 포함되었는데 중소기업의 특색을 감안하여 원자재 구매공동행위는 예외로 하여야 함(이해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 조선 92.7.14.,10면; 한국 92.7.14.,4면; 한국 92.7.18.,7면; 조선 92.8.1.,7면; 한겨레 92.8.1.,2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 47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참조

○ 자원절약형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

- 산업구조를 자원절약형으로 바꾸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원절약형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재생원료사용비율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함(상공부).

: 한겨레 92.7.15.,7면

○ 경제행정규제 관련법 개정의견

- 1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의 면제 및 법정의무고용 완화, 공장설립절차 완화, 금융차입절차·수출입절차·생산판매절차 완화 등을 위해 관련법률 4건을 포함한 시행령, 규칙·고시 등을 개정하기로 함(정부·민자당).

: 국민 92.7.16.,6면; 서울 92.7.17.,6면; 조선 92.7.17.,6면; 한겨레 92.7.17.,6면

○ 영업비밀보호관련법 제정의견

- 국내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하여 전문기술인력의 이직에 따른 공백과 이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발한 기술정보를 빼내가 피해를 입고 있으나 관련법규가 미비돼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음.

: 조선 92.7.16.,7면

○ 공산품품질관리법 개정의견

- 제조업체의 품질경영체제를 확산하기 위해 공산품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진흥법(가칭)」으로 개정하고 품질경영체제의 도입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공업진흥청).

: 조선 92.7.16.,7면

○ 국세기본법 관련 결정 및 의견

-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내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불분명하게 규정한 국세기본법 일부규정(제56조2항)은 국회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므로 위헌임(헌법재판소).

- 국민에게 혼돈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불분명하다고 지적을 받아 온 법규, 특히 관세법 등 각종세법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입법상의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국민 해설).
- 이번 결정으로 이 조항이 효력을 잃게됨에 따라 국세심판소는 앞으로 국세기본법의 관련규정과 지방세법 및 관세법 등을 재정비하여 제소기한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는 단일기준으로 통일하여야 함.

: 국민 92.7.23.,17면·19면; 국민 92.7.23.,17면; 서울 92.7.24.,17면; 한겨레 92.7.24.,15면

○ 사회간접자본세 신설에 관한 의견

-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휘발유·경유 등의 유류와 승용차 등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등을 모아 별도의 목적세를 신설하기로 함(경제기획원, 재무부).
- 목적세의 신설은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만들 것이므로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부당(내무부, 교육부).
- 도로와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는 지방예산을 빼앗아 갈 것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휘발유세를 인상하거나 공채를 발행해야 함(김기재, 내무부 지방재정국장).

: 한겨레 92.7.23.,7면; 조선 92.8.6.,6면

○ 전자자금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 정보사땅 매매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컴퓨터금융범죄의 범위규정과 함께 특히 컴퓨터 임의조작등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와 재재강화에 중점을 둔 「전자자금거래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하기로 함(재무부).

: 국민 92.7.24.,6면; 서울 92.7.24.,7면; 조선 92.7.24.,2면; 한겨레 92.7.24.,7면; 한국 92.7.24.,2면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

- 외화를 해외송금할 경우 건당금액이 5백달러이상이면 모두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해외이민갈 때의 이주정착비 한도는 세대별 한도제를 폐지하여 가족수에 따라 정해지도록 개정안을 마련,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재무부).

: 조선 92.7.28.,7면; 한겨레 92.7.28.,2면; 한국 92.7.28.,7면

○ 중소기업외국인고용확대 및 사적복제부과금도입유보에 관한 의견

-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해 임금이 낮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업종 등은 외국인 고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함(경제기획원).
- 복제부과금제도는 현재 수출·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전자산업 등 관련업계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여 여론수렴을 더 거친 뒤 여부를 검토하기로 함(경제기획원).

: 한겨레 92.7.30.,7면

○ 담배판매및광고규제에관한법률 및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

- 「담배판매및광고규제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청원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대통령후보공약 삽입 등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벌일 것임(담배광고금지입법공동추진위원회).
-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함(서울 강남구의회).
- 부천시의회의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는 재무부의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20세이상 성인출입업소를 제외한 시내전역에서 자판기 설치를 금지한 것은 영업권침해임(양담배업계).

: 한겨레 92.7.30.,15면

○ 상법 개정안(지점설립등기요건 완화)

- 지점설립시에 본사설립과 같은 등기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상법규정을 개정하여 지점설립시 등기사항중 발행주식총수, 자본총액, 명의개서대리인 등 10가지 항목을 삭제하는 상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함(대법원).

: 서울 92.7.31.,6면; 조선 92.7.31.,7면; 한겨레 92.7.31.,2면; 한국 92.7.31.,22면

○ 주유소 상품표시제(석유사업법)시행 관련 의견

- 국내 정유사들이 이익추구를 위해 각 지역별 생산량의 25% 정도를 상호교환판매하면서 주유소만 「상표표시제」를 시행토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반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임(주유소업자들).
- 주유소 「상표표시제」는 품질보증의 책임을 주유소가 짐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양질의 유류를 공급키 위한 제도이므로 주유소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동자부).

: 한국 92.7.31.,6면

○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정의견

- 육성기금은 전적으로 정부가 출연하되 전용하거나 차입하지 말고 새로이 기금을 조성해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음(어윤배, 숭실대교수: 민자당 정책토론회「지방중소기업육성방향과 대책」).
- 수도권 중소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액이 공장의 2년이상 가동에서 5년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방화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원래대로 환원해야 함. 지방중소기업은 각종 기부금·부담금·기금 등 준조세가 많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함(홍 광, 한신금속사대표:민자당 정책토론회「지방중소기업육성방향과 대책」).
- 상공행정에 대해 지방정부로의 과감한 권한이양이 있어야 함(이해상, 전북지역경제국장: 민자당 정책토론회「지방중소기업육성방향과 대책」).

: 서울 92.8.7.,6면

◎ 農 林·水 産

○ 선박안전조업규칙 개정안

- 출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서해수역 가운데 남북 40마일, 동서 30마일 수역을「조업자제수역」으로 지정하여 조업을 허용하고, 조업자제수역에 나가는 선박에 승선지도원을 태우도록 하고 있는 승선제도를 없애기로 입법예고 함(수산청).

: 한겨레 92,7,10.,7면

○ 농지·임야거래 규제 완화의견

- 토지거래허가지역내 농지 및 임야거래때 시·도지사와 일선행정단위의 허가와 매매증명을 모두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고쳐 매매증명만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임(정부·민자당).

: 조선 92.7.13.,1면

※ 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 3 참조

○ 어선법 개정안

- 어선등록을 할 수 없었던 1톤미만의 무동력선도 어선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불법어선을 건조할 경우 적발되면 선주와 조선소를 함께

처벌하며, 노후어선에 대한 명령 및 대집행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함(수산청).

: 국민 92.8.1.,1면

◎ 建　設

○ 고속도로 전용차선제 관련 의견

-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된 경인·경수고속도로에 중앙분리대쪽 제1, 제2차선 또는 제1, 제4차선을 버스와 카풀, 그리고 화물차 전용차선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설재훈,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안전실장).
- 고속도로 운영효율을 높이는 데는 전용차선제 외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며, 어떤 방안을 서둘러서 추진하기보다는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충분한 비교분석과 검증을 거친 뒤에 가장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정천수,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한겨레 92.7.18.,10면

○ 주차조례 개정의견

- 주·정차 과태료로 조성된 재원의 일부를 민영주차장건설자금으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운전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도록 하고 주차요금누증제를 6대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교통부지침).

: 서울 92.7.22.,18면; 한겨레 92.7.22.,14면

○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 제주도 그린벨트내 주택의 경우, 자녀분가용건축을 허용하고, 다방·음식점 등 생활시설과 노인정·양로원 등 복지시설의 신축을 대폭 허용함(건설부).
- 그린벨트의 훼손을 엄격히 규제해 온 정부의 기존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시행령제정도 철회되어야 함(한국 사설).
- 그린벨트완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제할 것임(민자당).

: 국민 92.7.24.,17면; 서울 92.7.25.,7면; 한겨레 92.7.25.,7면; 한국

92.7.25.,7면; 서울 92.7.26.,6면; 한국 92.7.27.,2면; 서울 92.7.31.,2면

○ 승용차 10부제운행 관련 의견

- 승용차 10부제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및 자동차세 감면 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한국 92.7.24.,22면

○ 도로법 개정안

-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포장으로 인해 주변 땅값이 상승했을 때 오른 땅값의 일부를 환수, 도로공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수익자 부담금제를 부활하며 각종벌금도 10배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건설부).

: 한국 92.7.29.,6면; 서울 92.7.29.,2면

○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 개정의견

- 공공공사의 감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될 경우, 감리회사가 시공회사에 대해 재시공이나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감리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부실공사가 감리잘못으로 드러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현행처벌규정을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조정할 방침임(건설부).
- 건설업법을 개정하여 도급한도액에 따른 입찰자격분류방식을 바꾸어 사전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최저입찰제도를 재무부 등과 협의하여 개선할 방침임(건설부).

: 국민 92.8.4.,19면; 조선 92.8.4.,23면; 한국 92.8.4.,1면; 조선 92.8.6.,1면; 한겨레 92.8.7.,1면

○ 지하개발법 제정의견

- 지하공간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지하재산권을 인정하여 지하시설물의 설치깊이에 따라 차등보상하고 지하공간환경오염방지조항도 포함하는 「지하개발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함(건설부).

: 한겨레 92.8.8.,7면

◎ 科學技術・交通・遞信

○ 해상스포츠규제관련법 제정시급

- 한강시민공원과 강물위 위락시설의 영업용모터보트는 유선 및 도선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나 자가용모터보트의 경우 단속할 법규가 전혀 없음.
- 외국의 경우처럼 면허제도나 교육제도가 빨리 마련되어야 함(오민석, 용성레저타운 계장).

: 한국 92.7.26.,22면

○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의견

- 협박・음란전화 등의 발신지확인을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함(민자당).
- 전화가 불순한 목적에 이용되는데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으므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함(정영훈 민자당의원).
- 통신비밀보호보다는 도청방지에 역점을 두어야 함(야당).

: 조선 92.7.31.,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 54면 -전기통신사업(발신자번호확인서비스 도입여부)- 참조

◎ 環　境・保　健

○ 환경관련법률 제정의견

환경관련 법률 제정 추진

- 환경기술개발및환경산업육성에관한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에관한법, 유해폐기물의교역통제에관한법, 환경자원재생공사법, 환경기술개발원법 등을 제정하기로 함(정부・민자당 환경분과 당정회의).

폐기물 교역통제에 관한 입법의견

- 유해폐기물의 수출입은 금지하되, 고철・폐지는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하여 금지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폐기물교역통제에관한법」을 제정 추진함(환경처).
- 유해 폐기물 교역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발효에 대비하여 「유해폐기물 교역통제에관한법」을 제정하기로 함(정부・민자당).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입법의견

- 생산업자가 자사생산제품의 폐기물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는 「폐기물감량화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제정 추진함(당정회의).
- 음식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기 위해 음식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퇴비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관계법 검토(환경처).
- 재활용가능쓰레기 배출시설에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폐기물재활용촉진법(가칭)」을 연내에 제정키로 함(환경처, 폐기물재활용종합대책).
- 폐기물재활용 사회단체에게도 예치금을 환불해 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등에 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업종별로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정하여 재활용 사업을 육성하기로 함(환경관련 당정회의).
-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연내에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1회용품 생산업체에는 폐기물처리부담금 부과하기로 함(환경관련 당정회의).
- 폐기물 재활용촉진 표시제 의무화, 폐기물 감량화 조치 및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공공기관의 재생제품사용의무화, 폐기물예치금 환불대상을 확대하기로 함(환경관련 당정회의).
- 자원절약과 폐기물의 감량화, 재활용 등을 위해 현행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 발전시킨 「자원재활용촉진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함(경제기획원).
- 상공부, 동자부, 환경처 등이 별도로 입법 추진해 온 자원절약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법률 제정하기로 함(관계부처 차관회의).
- 환경처·상공부·동자부 등이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여 혼선을 빚어 왔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을 환경처의 「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가칭)로 단일화하여, 재활용을 위한 상품재정에 관한 규정,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억제규정(환경처안), 중고품의 매매, 교환기능 강화(동자부안), 폐기물재활용 의무규정(상공부안)을 포함시키기로 함(환경처).

: 한국 92.7.12.,14면; 조선 92.7.17.,1면; 조선 92.7.18.,22면; 국민 92.7.18.,18면; 한국 92.7.19.,22면; 서울 92.7.21.,18면; 서울 92.7.26.,2면; 서울 92.7.26.,4면; 한겨레 92.7.28.,2면; 서울 92.7.28.,2면; 조선 92.7.28.,23면; 서울 92.7.30.,7면; 조선 92.7.30.,2면; 한국 92.7.30.,2면; 한겨레 92.7.30.,7면; 한국 92.8.3.,22면; 서울 92.8.7.,19면

○ 골프장환경규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의견)

- 골프장에 맹·고독성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4조)이 농약관리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구함(체육부).
- 농약관리법에는 사용대상·횟수 등만을 규정할 뿐 사용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할 경우 골프장들이 맹·고독성농약을 마구 사용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게 됨(환경처).

: 국민 92.7.20.,17면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

- 7종류에 국한되어 있는 해양투기허용폐기물에 하수처리오니와 정수오니를 추가하는 한편, 폐기물배출해역을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도록 변경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 함(환경처).

: 서울 92.7.24.,17면

○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 (단란주점 관련)

-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란주점영업을 신설하고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을 현행 10종에서 5종으로 단순화하며 식물제조·가공업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함(보사부).

: 서울 92.7.28.,19면; 조선 92.7.28.,22면; 한겨레 92.7.28.,2면; 한국 92.7.28.,22면; 한국 92.7.29.,1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 40면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및 의견(노래연습장 관련)- 참조

◎ 法 院·法 務

○ 낙태죄 허용(형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낙태는 강간에 의한 임신 등 불가피한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천주교측이 종교적인 교리를 법률문제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교조적인 처사임(법무부).
- 태아도 엄연한 생명이며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므로 어떤 경우라도 낙태는 허용되어서는 안됨(천주교).
- 낙태허용여부는 종교적 교리측면만이 아닌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보아

야 하며, 강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까지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부분허용은 인정되어야 함(최성창 검사).

: 조선 92.7.27.,22면; 한겨레 92.7.12.,9면

○ 성폭력처벌 관련 법안들에 관한 의견

- 여야의 법안이 가해자의 범죄행위보다 피해자의 저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문제이며 어린이 강간, 근친간의 성폭력 규정이 허술하고 전담법원의 설치, 교화시설마련, 직장내의 성폭력 규정 보완이 필요함(신혜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 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성폭력특별법 공청회」).
- 일률적인 처벌강화보다 성범죄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처벌규정이 필요함(김성남, 변호사:민주당「성폭력특별법 공청회」).
- 성폭력특별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폭력유발요인에 대한 법규정 정비가 시급함(이영자, 성심여대교수:민주당「성폭력특별법 공청회」).
- 이중적인 성규범이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사회의 성문화의 문제점을 수용하는 법안이 절실하며, 아내강간 등 가정내 성폭력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함(이영자, 성심여대교수: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성폭력특별법안, 무엇이 쟁점인가」공개토론회).
- 정당안(案)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정도이고, 성폭력의 다양한 유형을 담고 있지 못하며, 성폭력피해자 보호조항도 민자당, 민주당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미흡함(이종걸, 변호사:한국여성단체연한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성폭력특별법안, 무엇이 쟁점인가」공개토론회).
- 기존 형법틀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 다수의 일반인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면 여성계 요구보다 보수적일 수 밖에 없으나, 이런 점이 민자당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임(정순옥, 민자당 여성국장).
- 법안의 목적자체가 민자당안과 차이나고, 정조에 관한 죄 규정은 형식상 이름만 차용한 것이지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성범죄로 보는 여성계와 같은 입장임(김창희, 민주당 여성특별위원회국장).

: 한겨레 92.7.12.,8면; 국민 92.7.15.,15면; 한겨레 92.7.17.,8면

※「국내입법의견조사」제1호 59~60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안 - 민자당, 성폭력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성폭력위」의 수정안, 성폭력행위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 민주당 참조

○ 뇌사·장기이식에 대한 논쟁

- 뇌사인정이 인명경시풍조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게 관념적인 뇌사인정으로 장기이식이 가능하게 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가능함(최종욱, 국민대교수).

: 한국 92.7.16.,9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 제1편 참조

○ 국가보안법 개정의견

- 국가보안법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함(유엔인권위원회).
- 보안법의 용어들은 일반시민들에게 법으로 금지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공권력에 대한 공포와 강박관념을 야기하고 있음(보지디미트리예비치, 유고슬라비아 인권전문가).

: 한국 92.7.17.,2면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 57면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의견- 참조

○ 변호사법 개정시안

- 법무부가 관장해 온 변호사징계권중 일부(회칙위반, 품위손상, 형사입건되지 않는 비위 등 경미한 사항)가 변협으로 이관하고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해 무제한 변호사업무를 정지할 수 있었던 제도도 일정한 제한(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결과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을 가하도록 함(법무부).

: 한국 92.7.28.,23면

○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관련 의견

-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기피하고 있는 일본과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 및 수사공조의 관례를 만들어 나가며, 미국 등 다른 주요국가들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사법공조 조약의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임(법무부).

: 한겨레 92.7.31.,14면

Ⅱ. 최신법령 소개

1992. 7. 11. — 1992. 8. 10

공포번호		건명	공포연월일
조약	1098	대한민국정부와이태리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 방지를위한 협약	1992.7.13
	1097	대한민국과아르헨티나공화국정부간의 상용복수사증발급각서교환	1992.7.21
	1099	대한민국과러시아연방간의영사협약	1992.7.27
대통령령	13697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중개정령	1992.7.18
	13698	중소기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2.7.21
	13699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1992.7.21
	13700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2.7.25
	13701	소방법시행령개정령	1992.7.28
	13702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1992.7.30
	137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개정령	1992.7.31
	13704	외무무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2.7.31
	13705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 령중개정령	1992.8. 1
	13706	골재채취법시행령	1992.8. 8
총리령	401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령	1992.7.14
	402	과학관육성법시행규칙	1992.8. 8
	403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1992.8. 8
	404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8. 8
	405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8. 8
	406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8. 8
	40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8. 8
내무부령	569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7.18
	570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1992.8. 6
재무부령	1888	세관관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령	1992.7.11
	1889	전산조사에관한한시조직설치규칙	1992.7.20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재 무 부 령	1883	재무부자체감사규칙개정령	1992.7.24
	1890	담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7.24
문 화 부 령	11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8. 6
	12	국립중앙도서관이용규칙중개정령	1992.8.10
농림수산부령	1101	국립동물검역소지소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1992.7.11
	1102	국립식물검역소지소출장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2.7.11
	1103	비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1992.8. 5
동력자원부령	129	석탄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7.28
건 설 부 령	510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7.13
	511	골재채취법시행규칙	1992.8. 8
보건사회부령	892	의료기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7.16
교 통 부 령	978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중개정령	1992.7.15
	979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1992.7.11
	980	자동차정류장법시행규칙개정령	1992.7.23
	981	자동차정류장구조설비기준령중개정령	1992.7.23
	9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7.31
	983	항공시설관리규칙중개정령	1992.7.30
체 신 부 령	845	전파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7.25

국내입법의견조사(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제2호

1992年 8月 29日 印刷
1992年 8月 31日 發行

發行人 **李 世 薰**
發行處 **韓國法制研究院**
印刷處 **한국컴퓨터산업(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값 1,200원